

2025학년도 동계방학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오리엔테이션

장학지원팀



» 국가근로장학금이란 ?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위해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장학금'에 속함

»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 국가근로장학금이란 ?

국가근로장학금에 속하는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은 근로 경험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근로장학사업으로, 근로 학생의 전공 관련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학업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

2개 부서에서 선발 (장학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 총괄 관리 및 장학금 지급은 “**장학지원팀**”

» 취업연계중점대학 유형

1. 교수추천형

교수님이 근로지 발굴 및 학생 추천 → 장학지원팀에서 선발결과 발표

2. 근로지발굴형

근로지 · 학생 모집 후 기업 면접 등으로 최종 선발 → 현장지원실습센터에서
선발결과 발표

-방학 중에만 운영 (하계, 동계)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예산 대폭 감소

- 재단에서 추가경정을 통해 국가근로 전체 예산 **1,000억 감액**
⇒ 우리대학의 국가근로 예산도 대폭 삭감
- 예산 삭감으로 동계방학 국가근로 조기 종료 가능
⇒ **국고예산 소진시 ⇒ 조기 종료에 관한 안내를 문자 및 장학공지를 통해**
긴급 안내 예정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에 관한 현장점검 실시 결과

- **점검일시:** 2025.11.17(월)
- **점검목적:** 부정근로 적발 및 근로관리 실태 점검
-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항**
 - 학생 출근부 근로지 외 출근부 등록(집, 대중교통)
 - *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지 내에서 등록해야 함
 - **해외 입.출국일에 출근부 허위 등록**
 - 위치기반 미동의 또는 위치확인 불가 사례 다수
 - * 위치기반 미동의시 부정근로 의심 대상으로 재단 집중 모니터링 대상
 - 근무시간 중 근로지 이탈
 - 국가근로 관리자 동반근로 미이행

기본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 근로 활동 중 학적변동(휴학, 편입, 졸업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내용 전달

※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인** 대학생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선발 가능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면책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직전학기 성적이 **C^o(70점/100점) 이상**

선발 과정



가이드북 p.9

근로시간

- 학기+방학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640시간 이내에서 근로 가능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방학중)

40시간

학기당 최대(학기+방학)

520시간 → 64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근로기간

1차 근로기간 : 2025.12.22(월) ~ 2026.02.13(금)

2차 근로기간 : 2026.01.02(금) ~ 2026.02.13(금)

※ 재단 미신청자, 추가선발자는 12/29 재단에 신청 후 1월 이후 근로가능

※ 출근부 등록 후 기관과 업무스케줄 협의하여 근로시작일 조정 가능(12/22 이후)

※ 반드시 출근부 등록 완료 후 근로 시작하여야 함 (출근부 등록은 12/18이후 부터 가능)

가이드북 p.11

근로장학금

- 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 시간에 근거하여 국가근로장학금을 산정함

교내 근로
10,030원
 (26년 1월~ 10,320원)

교외 근로
12,430원

* 온라인 출근부 미입력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근로활동 전후로 출근부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 30분 단위가 기준**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월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45분일 경우, 40시간 30분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함(15분 절사)

장학금 지급일

- 근무한 달의 다음달 3일 이내 기관에서 출근부 제출
- 출근부 제출 시 학생의 정정 건도 기관에서 수정하여 제출
- 근무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근로비 지급 (2월분은 2월말에 지급 예정)**

가이드북 p.78~

국가근로장학금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근로학생 배정(장학지원팀) 이후 필수절차 이행가능

국가근로장학금(취업연계유형) 신청

서약서/사이버 OT

학업시간표 등록

- 1,2차 통합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
-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은 별도신청 가능

- 서약서 확인 시, 공동인증서 필요
- 서약서 확인 후, 사이버OT 이수

- 소속대학 학사시간표와 동일하게 입력
※ 계절학기, 실습시간표 포함
- 방학 중 근로 시, 수업(실습)이 없는 경우, 시간표 입력 불필요

업무스케줄 작성

안전교육 진행

☆ 근로진행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 근로 전 기관과 협의된 시간으로 업무스케줄을 작성
※ 업무스케줄은 상시 수정 가능

- 근로지 담당자는 안전교육, 부정 근로 예방교육 등 주의사항 교육

- 근로 전후 즉시 출근부 입력

- 안전교육 내용을 보고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 서명을 받아 홈페이지에서 제출

출근부 대학제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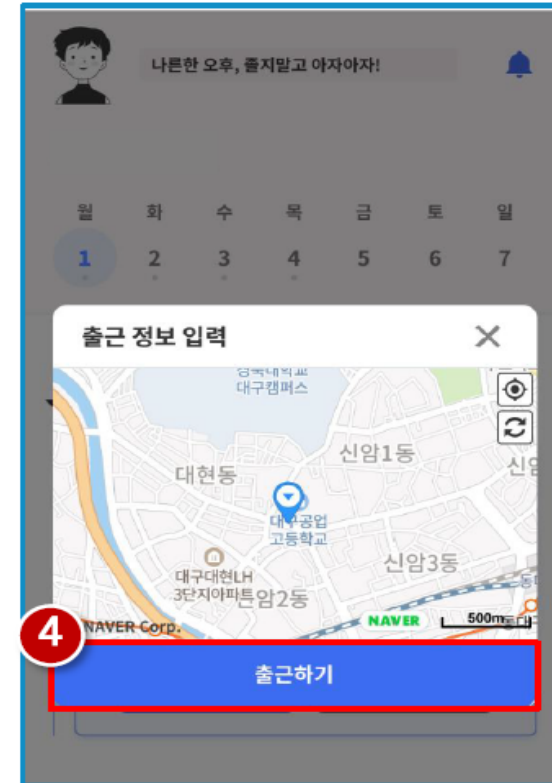
(다음달 3일 이내까지 대학제출 요청)

출근부 등록 방법(모바일)

플레이스토어(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검색 후 앱 설치



[등록] 탭에서 근로시간을 확인한 후,
출근 버튼 클릭
※ 근로카드보이지 않는 경우 업무스케줄 작성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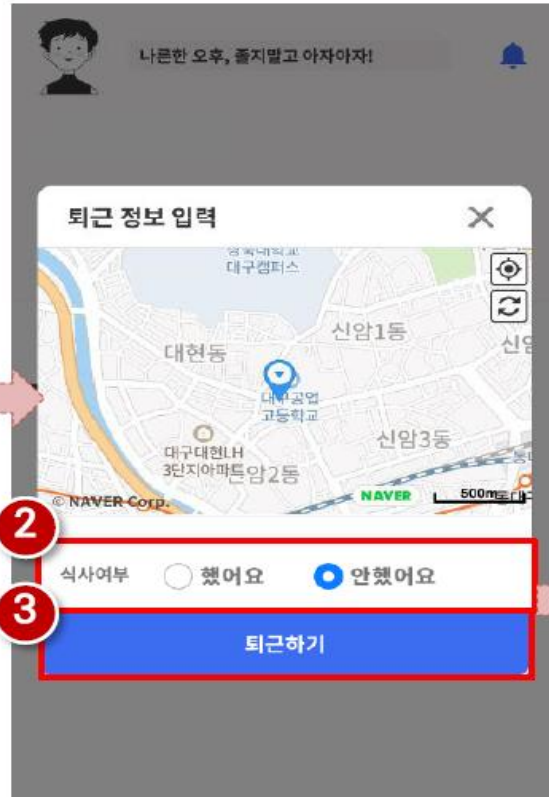


본인의 위치 확인 후 [출근하기] 버튼클릭
※ 현위치가 정확히 조회되지 않으면 [현위치]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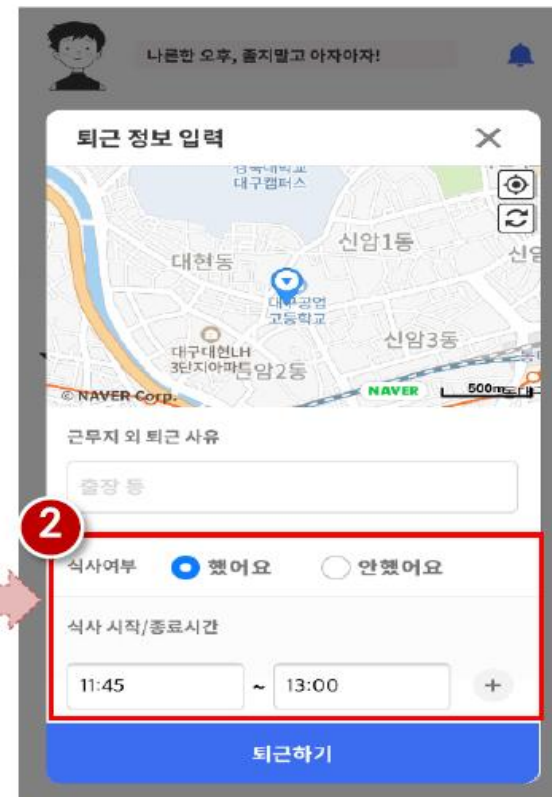
출근부 등록 방법(모바일)



퇴근 시, [퇴근] 버튼 클릭



근무 중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있었을 경우,
식사 여부 [했어요]에 체크



실제 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정확히 입력

①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는 근로당일 작성

② 점심시간 근로 불가 (점심을 먹고 안먹고로 구분X) → 담당자 없이 점심시간 근로 불가

③ 점심시간 필수 체크(미등록시 근로기관에 수정요청)

» ★ 출근부에 점심시간 미입력시 허위근로로 간주(특별근로신청자 제외)

④ 점심시간,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 근로 필요시 → 학생이 특별근로 신청(이메일)

⑤ 특별근로신청사유서, 근무포기사유서 → 장학지원팀 이메일로 제출

» ★ 장학 이메일 제출 : scholarship@cu.ac.kr (장학공지에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 ★ 특별근로신청서는 근로시작 전 미리 제출, 해당 근로일 출근부는 직접 등록하여야 인정됨



☑️ 업무스케줄은 근무시작일 전까지 등록

» ★ 입력하지 못한 출근내역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정정요청

☑️ 위치기반이 근로지외로 조회 → 위치동의 후 GPS 확인, 근로지 좌표 재설정 요청

☑️ 수업시간 내 근로 불가(일시적 휴강, 시간표 변경이 있더라도 허용 불가)_ 계절학기 수강생

☑️ 학적변동시 출근부 등록가능일

» ★ 휴학 또는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인정 (미졸자(학기초과자)도 졸업전일까지만 근로가능)

☑️ 근로장학생 단독 근로 금지(담당자 관리하에 근로)

☑️ 허위로 출근부 입력시 장학금 반환 및 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 ① 근로장학생 과실로 출근부 미입력한 경우, 근로기관에서 실제 출근내역 확인받은 후 수정제출
- ② 학생 출근부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달 3일 이내 근로지 담당자가 정정처리
- ③ 출근부 기관제출 전 반드시 학생의 정정건 반영후 제출(출근부 기관제출 후는 정정요청 불가)
- ④ 학기당 기관등록 정정횟수 25건 범위내 가능
- ⑤ 출근부는 근로지 내에서 등록, 이동하면서 출근부 등록 불가(집 또는 대중교통안에서 등록 불가)
- ⑥ 근로는 재학 중에만 가능 (단, 재학중이라도 조기 취업자는 근로 불가)

Q 근로지에 정정요청을 했는데 출근부 앱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A 기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ex) 1월 29일 정정건 → 2월 6일 정정요청 → 근로지 출근부 대학제출 완료이후이므로
정정불가

출근부 대학제출 마감은 다음달 3일 이내이며, 출근부 대학제출 후에는 제출 취소 후
정정해 달라고 해야 함(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정정요청 불가)

※정정내역 최종확인 → 근로한 다음달 10일까지 최종내역 확인가능 → 이상 있을시
장학지원팀으로 연락바람 → 근로한 다음달 20일 장학금 지급

★ 근로 시작 전 안내자료 반드시 숙지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므로 유의바랍니다.

- ① 근로기관-근로장학생 상호평가 실시 의무(한국장학재단에서 포털에서 가능)
 - » 40시간 초과시 1차 평가, 160시간 초과시 2차 평가 필수 → 평가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 불가
- ② 한국장학재단 상호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자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근로 중지된 경우 다음학기 근태/근로 불량자로 -10점 감점
- ③ 출근부 작성 불량자는 기관의 출근부 대학제출을 지연시키는 학생 또는 출근부 대학제출 기간 이후 출근부 수정을 2회 이상 요청시 -10점 감점(학기/방학 별도)
- ④ 근로 중간이라도 근로기관에서 근태 등을 지적하면 학생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2회 이상 근로기관 이의 제기시에는 장학지원팀에서 상호확인 후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음
- ⑤ 선발자 중 근로기간과 장학지원팀에 **의사통보 없이** 근로를 포기하거나, 3일 이상 무단결근 하는 경우 다음학기 근로장학생 선발이 제한됨
 - » 근로포기시 반드시 근무포기사유서 장학지원팀 이메일로 제출

가이드북 p.118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하던 근로장학생 A군은 근로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나가거나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실제로 근로는 하지 않고 출근부만 기록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A군은 근로는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여 장학금을 받은 허위근로에 해당

*** 장학금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P군은 1월 3일에 근로해야 하지만 1월 7일로 바뀌어 근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출근부를 입력할 때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1월 3일에 출근부를 입력하였다.

P군은 입력한 출근부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근로한 대체근로에 해당

***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12 12 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C양은 늦잠을 자느라 그만 학교에 가지 못해 친한 친구 G양에게 오늘 하루만 본인 대신 근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한 친구의 부탁에 G양은 C양 대신 중앙도서관에서 대신 근로를 하였다.

C양은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한 대리근로에 해당된다.

*** 대리근로자를 포함하여 장학금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이럴 땐 근로할 수 없어요!

중복참여 금지 ①



대학생 근로장학생사업 동시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학업시간 중복불가 ②



학업시간표 중복 불가

-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 근로 불가

재학중이 아닌경우 ③



학적변동이 발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등
- 대학 재학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 학적 변동 발생 시, 대학에 안내

자격해제 사유발생 ④



근로장학생 자격해제 사유

-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가 적발된 경우,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

* 장학재단에서 다음연도에 이해관계 확인하므로 졸업하더라도 적발 시 반납해야 함

< 근로기관 및 근로지 담당자(대표자 포함)와 가족관계 불가 >

근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 포함) 또는 장애대학생과 **이해관계 금지**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고지할 것

장학생은 매칭되거나 매칭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대표자, 담당자 포함)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안내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으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과 장애대학생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

근로 서약서

학 과
학 번
성 명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재단의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 자체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참여 제한,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등 행정적·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1. **(부정근로 방지)**본인은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때 근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학적변동(휴학,계적,졸업) 시 근로를 즉시 중단하고 장학지인림에 안내하겠습니다.
3. **(부정근로 방지)**본인은 부정근로 등 아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제재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에 모두 참여제한됨에 동의합니다.
 - 가. 부정근로
 - 허위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2년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대체근로 :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 나. 부적격자 : 선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발된 경우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 다. 허위서류 제출자 :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시 근로중지, 적발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강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4. **(이해관계 회피)** 본인은 근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장학지인림에 이들 사안에 고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근로기관(근로지)으로 대칭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근로장학금 관리를 위해 동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안에 미고지 이행사실이 이후에 발견될 경우 환수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 서약서 작성 필수

- 가. 부정근로 방지
- 나. 이해관계 회피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 안내
(근로장학생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푸른동대 한국장학재단

The infographic features a blue and white background with a large blue wave graphic. In the center, three business professionals (two men and one woman) are gathered around a table, reviewing documents. One man is holding a laptop, and another is pointing at a document. A woman is standing between them, also looking at the documents. In the background, there are faint icons of gears and a bar chart. The text is in Korean, and the KOSAF logo is visible in the bottom right corner.

가. 위치기반 동의는 선택사항임

나. 부정근로 의심발생 시 위치 기반 여부를 재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

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위치기반 동의